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규정을 다시 신설하고 이를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함(안 제24조제3호 및 제25조의2 신설).
- 영화업자의 신고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의 변경신고,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의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청이 수리하지 않아도 해당 신고 의무가 이행¹⁾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 민원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26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 및 제69조).
- 이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경우 상영등급분류 면제 대상으로 명시함(안 제29조 제1항제2호의2 신설).
-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에 관하여

1) 「행정기본법」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70조제6항).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함(안 제35조 제10호, 제95조의2 및 제97조 본문).

II. 검토의견 및 관계기관 의견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개정안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다시 신설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법률안의 국회 논의 경과는 다음과 같음.

구 분	발의(제출)일자	내 용	경 과
강유정의원안 (의안번호 제403호)	2024. 6. 12.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의무화	위원회 대안으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의뢰
임오경의원안 (의안번호 제959호)	2024. 6. 26.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의무화	
정부안 (의안번호 제2284호)	2024. 7. 26.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폐지	문체위 소위 계류
이종욱의원안 (의안번호 제4591호)	2024. 10. 7.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폐지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후 본회의 의결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관련 법률안들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논의 중 이종욱의원안이 2025년도 세입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어 2024년 12월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고, 제418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2024. 12. 10.)에서 의결된 후 공포·시행²⁾됨으로써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된 상태임.

이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 법안심사소위(2025. 1. 16.)에서 강유정의원안과 임오경의원안이 반영된 대안을 의결하고, 해당 대안을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1. 21.)에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음.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규정한 개정안 제25조의2는 폐지 전 법률의 규정과 대부분 동일하며, 부과금 요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유효기간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구 분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전 법률	개정안
부과금의 징수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에서 100분의 3으로 정함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하도록 함.
유효기간 ³⁾	2028년 12월 31일까지	없음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① 영화관람객에 대해서만 재원부담을 부

2)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22호, 2024. 12. 31., 일부개정]

3)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①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과할 책임성이 미흡하며 부과 타당성이 낮다는 그간의 부담금 평가결과와 헌법소원심판 시⁴⁾ 위헌 의견이 다수 제기⁵⁾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②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바 시행 한 달여 만에 재신설 시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③ 영화진흥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 재원을 활용하여 차질없이 지원⁶⁾할 예정이므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재신설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입장임.

(전문위원 이 화 실)

4) (2007헌마860) 위헌 의견 5인으로 위헌 결정 정족수(6인)에 미달하여 합헌 결정됨.

5) 위헌 의견 요지: 부과목적과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영화관 관람객을 납부의무자로 하여 재정책임을 부과 → 합리적 근거 없이 국민을 차별

6) 부담금 폐지(△294억원)에도 불구하고, '25년 영화기금 사업비 +20.3% 확대(467억원→562억원)